

##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07. 03. 01 개정 2013. 02. 28

개정 2014. 03. 31 개정 2018. 10. 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규정류 제정 및 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동대학교의 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조정처장, 기획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 02. 28., 2014. 03. 31., 2018. 10. 29.)

② 임명직 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된다.(개정 2013. 02. 28., 2014. 03. 31., 2018. 10. 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3. 02. 28, 2014. 03. 3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총장 자문에 응하여 교무위원회에 상정하는 제규정을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3. 02. 28., 2018. 10.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제규정의 제정, 개·폐 및 정비
2. 제규정 자료의 조사 연구
3. 제규정집의 편찬
4. 제규정의 용어정비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 (안건제출 및 의견 청취) ① 소관부서에서 제규정안을 교무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사전 검토를 마친 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9.)

② 제 규정을 제출한 소관부서장 및 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 (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